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의무휴업일의 요일 변경,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등〉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13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90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8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김성원의원안 2건)	5
2. 지자체장에 의무휴업일 결정 위임(강승규·김성원의원안)	11
3.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 등의 통신판매 허용(강승규의원안) ·	16
4.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등(강승규의원안)	19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4513호]

1.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의안번호 제2205090호]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의안번호 제2205581호]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4513호]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

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의안번호 제2205090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내용

- 가.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
대규모점포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 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의안번호 제2205581호]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김성원의원안 2건)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제외하고(안 제2조4호다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900~3,000m²인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4호라목).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5090호)	김성원의원안 (제558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 ----- -----.	4. ----- ----- ----- -----.
가.·나.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 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		다. ----- ----- ----- -----

점형 <u>체인사업</u> 및 같은 호 나목 에 따른 프랜차 이즈형 <u>체인사업</u> 의 형태로 운영 하는 점포 <신 설>	라. 매장면적의 합계 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 터 미만인 점포	-- <u>체인사업의</u> ----- ----- ----- ----- -----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 음)	5. ~ 16. (현행과 같 음)

현행법은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경영자가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3,000m²)미만의 점포를 개설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규정하고,¹⁾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의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²⁾.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준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 3,000m² 미만 점포 중 ①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또는 그 계열회사)나 ②대기업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또는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³⁾의 형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준대규모점포에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체인본부가 개별 점포의 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2)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확대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그러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경우에도 해당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식자재마트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 상권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보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준대규모점포 등의 규제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제외하는 한편, 통상 식자재마트의 규모인 900~3,000m² 미만인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

다만, 두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대규모점포의 정의에서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영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대상이나, 경쟁 유통채널(쿠팡 등 온라인유통,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한국수퍼마켓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매년 1,2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폐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 매장면적의 합계가 900~3,000m²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자재마트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⁴⁾, 식자

재마트 규제에 따른 불편 및 피해가 (음식점)자영업자와 소비자 등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식자재마트를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므로⁵⁾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 구역 내 점포 개설시 등록의무부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마트협회는 면적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는 사업소제지(특별시·광역시 vs 그 외 소도시)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⁶⁾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반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면적 기준을 추가하면 준대규모점포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4)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2월 식자재마트 현황 실태조사 결과, 마트협회 회원사, 식자재마트명을 보유한 점포, 300m² 이상 식품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중인 식자재마트는 872개이며, 이 중 726개(83.2%)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함.

5) 식자재마트는 규모, 취급품목, 운영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며 슈퍼마켓 등 기존 소규모 종합 소매업태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합리적 규제대상 설정이 어렵다는 설명임. 또한, 식자재마트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은 매장면적·입지·업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소규모 식자재마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매장 규모와 주변상권과 상관관계도 미흡하다고 함.

6) 소도시 단위 영업면적당 매출규모가 대도시 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하므로,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동일매출 대비 매장면적이 2배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지자체장에 의무휴업일 결정 위임(강승규·김성원의원안)

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김성원의원안은 의무휴업일 수를 이틀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보다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제2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5090)	강승규의원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u>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 ----- -----다음 각 호에 <u>대하여</u> ----- -----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 ----- ----- <u>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

현행	김성원의원안(5090)	강승규의원안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 5퍼센트 이상인 대규 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1. <u>영업시간 제한</u> 2. <u>의무휴업일 지정</u>	1. <u>대형마트(대규모점 포에 개설된 점포로 서 대형마트의 요건 을 갖춘 점포를 포 함한다)</u> 2. <u>준대규모점포</u>	1. 2.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 전 0시부터 오전 10시 까지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 다.</u>	② <u>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영업시 간을 제한할 수 있다.</u> 1. <u>대형마트: 오전 0시 부터 오전 10시까지</u> 2. <u>준대규모점포: 오전 0 시부터 오전 9시까지</u>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김성원의원안(5090)	강승규의원안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③ ----- ----- 제1항에 따라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의무휴업일 수 2. 의무휴업일의 요일 ④ (현행과 같음)	③ ----- -----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2회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장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9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모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있고, 61개는 평일에, 16개는 평일과 공휴일에 각각 1회씩 지정하고 있음.⁷⁾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현황('24.10월)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점 (176개)			
		의무휴업 시행 (173개)			미시행 ¹⁾
		공휴일	평일	공휴일+평일 ²⁾	
합계	229	96	61	16	3 (울주·영암·연천)

주1) 준대규모점포만 출점하여 의무휴업 제도(지자체 선택사항)를 도입하지 아니함

주2) 월 2회 의무휴업 중 1회만 평일로 전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여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장보기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등의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두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김성원의원안의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7)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평일 포함 휴무 지자체(77곳)

서울 (3)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	경기 (18)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양주시, 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파주시, 동두천시, 하남시, 안산시, 가평군, 의정부시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강원 (4)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울산 (3)	중구, 남구, 북구	충북 (3)	청주시, 진천군, 충주시
전북 (1)	임실군	충남 (7)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경남 (1)	합천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경북 (11)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영주시, 김천시,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부산 (16)	동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월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평일에 대형마트 쇼핑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지역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협의를 거쳐 도입된 이후 10여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 등의 통신판매 허용(강승규의원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적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강승규의원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④ (생략) <u><신 설></u>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통신판매(재화 등의 공급 및 배송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⁸⁾, 대형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8)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④ (생략)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행위도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바 있으며,⁹⁾ 이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범위는 온라인 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업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영업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 등만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로서는 도시 중심의 새벽배송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정주 여건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이 제한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

9)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517

라인배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프라인 영업제한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행태를 막을 수 없으므로 건전한 유통질서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온라인유통의 영업제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과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가 도입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등(강승규의원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진작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강승규의원안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 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모티브로 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4년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등 유통협단체와¹⁰⁾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주최로 11월 9일부터 30일

¹⁰⁾유통협단체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한국면세점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등을 일컫음.

까지 22일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실시하였는데, 유통·제조·서비스 기업 등 역대 최대규모인 2,635개 업체가 참여하여 '24.11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8%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에 기여하였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등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기업의 홍보 및 판매증진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사를 거듭할수록 참여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¹¹⁾

다만,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행사기획·홍보 및 소상공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2025년도 예산은 15억 8,3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37.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예산 및 참여기업수

구 분	'15년	'16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행사 기간	10.1~14	9.29~10.31	11.1~15	11.1~15	11.11~30	11.9~30	11.8~30. (잠정)
	14일	33일	15일	15일	20일	22일	23일
예산(백만원)	4,180	4,000	5,068	2,266	2,266	1,866	1,583
참여업체 수	92개	341개	2,155개	2,316개	2,549개	2,635개	미정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제출자료

11) 참여기업 수: ('16) 341개 → ('21) 2,155개 → ('22) 2,316개 → ('24) 2,635개
 참여기업 만족도: ('21) 68.3 → ('22) 66.4 → ('23) 73.6 → ('24) 취합중

이에 개정안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간 유통업계의 쇼핑행사 정례화 요구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높은 국민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461